

<첨부2>

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사용잔액 이월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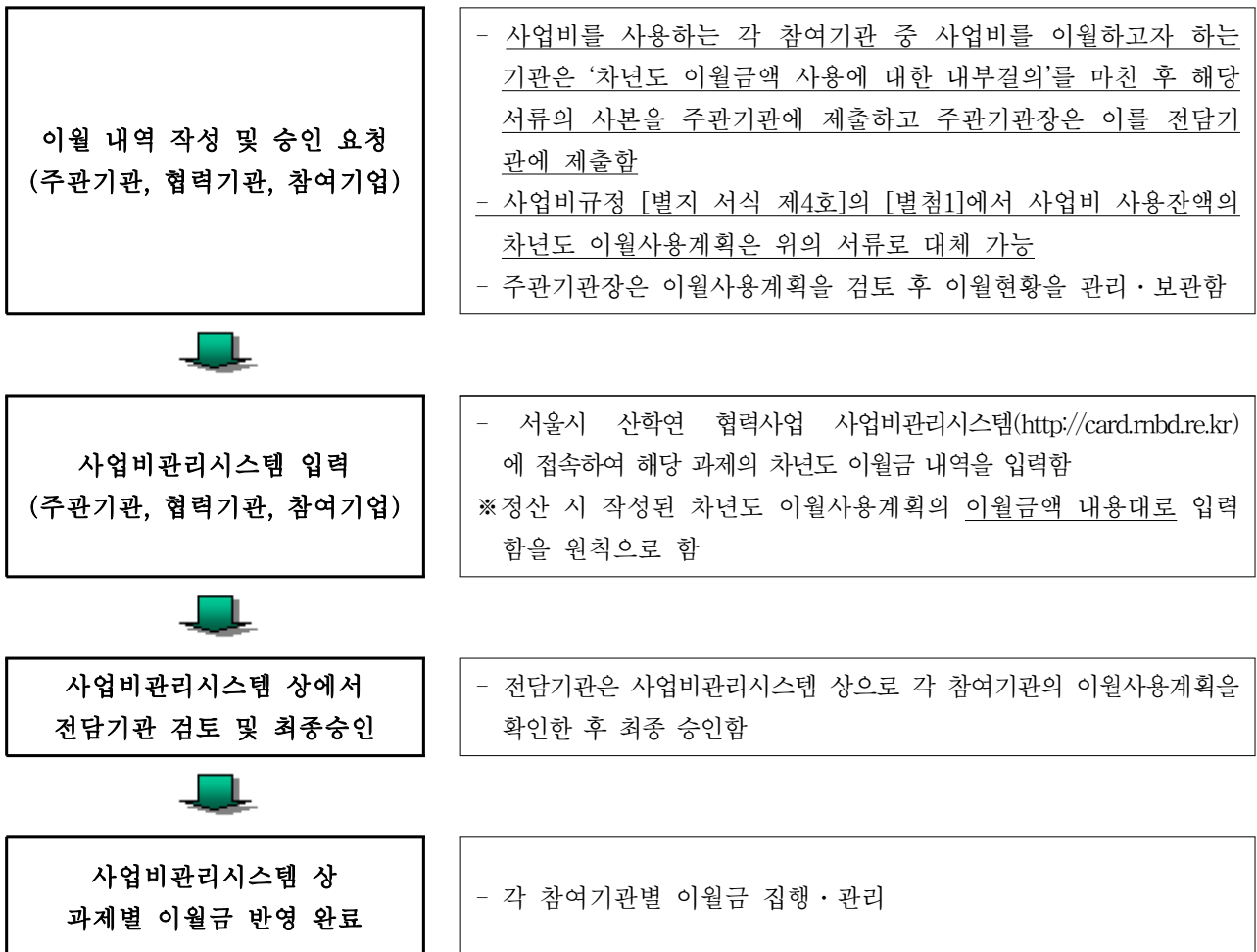
■ 관련 근거

-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0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
-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규정 6. 사업비 사용 및 변경

■ 대상 과제

- 총 사업기간(각 단계별 사업기간 포함)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
* 대상과제 해당여부는 세부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확인

■ 이월 절차



이월 방법

- 사업비 사용잔액은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에서 주관기관장에게 보고한 후, 전담기관 승인을 득하여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·사용할 수 있으며, 이월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에 반납함
- 이월시 유의사항
 - 이월금액은 사업비(시지원금+민간부담현금) 기준이며, 각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잔액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별로 이월함
 -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
 - 직접비 중 사업운영비는 사업비규정 개정으로 폐지
 - 직접비 중 성과장려비는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함
 - 직접비 중 사업운영비는 차년도의 기술정보활동비(회의비)로 이월
 - 간접비 중 간접경비, 기술개발준비금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증액 또는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함
 - 위탁사업비는 차년도로 연계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본 과제 비목의 이월 방법과 동일함. 다만, 위탁사업 종료 시 본 과제 직접비로 통합하여 이월함
 - 발생이자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직접비(성과장려비 제외)로 이월함
- 비목(세부비목)별 이월방법

비목	세부비목	이월 방법	비고
인건비	인건비	인건비로 이월 (세부비목 간 변경가능)	
직접비	직접비	직접비로 이월 (세부비목 간 변경가능)	-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'범용 기자재'로 신설 집행 불가 - 국외여비로 (신설) 증액 이월시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승인
	성과장려비	성과장려비로 이월	
	사업운영비	기술정보 활동비(회의비)	
간접비*	간접경비	간접경비로 이월	별도계정 관리 (용도 외 사용불가)
	기술개발준비금	기술개발준비금으로 이월	
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**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로 이월	
	연구실 안전관리비**	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이월	
위탁사업비	-	위탁사업비 또는 직접비로 이월	

* 간접비는 전년도 사용잔액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별도로 적립·사용도 가능하며, 이 경우 참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DB를 구축하여 흡수액, 사용액, 잔액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(별도 관리를 위한 자체규정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)

**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당해 과제와 직접

관련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함

(참여기관에서는 수행 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및 연구실 안전 관리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/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를 2개 이상 수행할 경우 해당 과제별로 관리하여야 함)

※ 차년도 협약체결시 기존 참여기관 탈퇴시 사업비 잔액은 이월불가

■ 기타 사항

● 차년도 사업비('08.12.1- '09.11.30)와 당해연도('07.12.1- '08.11.30) 이월금액은 분리하여 관리함

- 차년도 사업비 산정 시 연동비목(인건비, 성과장려비, 간접경비, 기술개발준비금, 연구실 안전관리비, 위탁사업비)에는 당해연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
- 차년도 사업비 변경 시 전담기관 승인사항인 비목별 20% 이상에는 당해연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

● 정산잔액 중 불인정금액은 이월할 수 없으며 '서울시지분액 종합관리계좌 (우리은행 1005-201-054376, 예금주: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부설산학연지원센터)'로 반납하여야 함

※ 정산잔액 중 서울시지분액 산정은 다음과 같음

$\text{서울시지분액} = (\text{정산잔액} + \text{위약금}) \times \frac{\text{시지원금}}{\text{시지원금} + \text{민간부담현금}}$

※ 별지서식 제8호 작성과 관련하여 계속과제의 경우 '반납금액' 계산시 정산잔액은 회계감사 결과의 정산잔액에서 이월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시지분액 계산

※ "시지원금/(시지원금+민간부담현금)"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

※ 위약금은 2008년 5월 2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적용